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 4. 11.)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 함

3.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 10. 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을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에 대한 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각각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단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

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5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을 “질병휴직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육아휴직기간.

제53조제5항제3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질병휴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 ----- ----- ----- ----- ----- ---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1. -----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 ----- ----- -----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 환경경찰공무원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제48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 환경경찰공무원의 지정) ①----- -----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9조(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에 대한 명령-----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

-----.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 제43조제3항-

에 따라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illegible]

②

제43조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
원법」 제43조제2항-----

1.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신 설>

<신 설>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생 략)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

(이하 “질병휴직” 이라 한다)
을 연속하여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
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
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
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
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
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
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
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
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
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
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인 경우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나.·다. (생략)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해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2) (생략)

2. (생략)

③·④ (생략)

⑤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

-----.

1. -----

가. -----

----- 질병휴직한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육아휴직기간. -----

-----.

1)·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 2. (생략)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⑥ · ⑦ (생략)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86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 4.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육아휴직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

1. -----

----- 질병휴직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335